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3124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5. 16.

판 결 선 고 2019. 7.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8. 6.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추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95,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C 공장용지 1,593㎡ 및 지상 건물 3동(이하 통틀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1. 상호를 'D', 업종은 '건설기계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4. 12.경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게 제1 부동산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9241)을 업종으로 하는 공장설립을 완료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9.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피고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1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27,163,000원을 면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 12. 제1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호를 'D'으로 하여 부분(일반)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 20. [redacted]시 [redacted]구 E 전 354㎡ 중 107분의 31지분(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 4. 26. [redacted]시 [redacted]구 F 전 473㎡(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3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는데, 역시 피고로부터 제2 부동산의 취득세 등 816,000원, 제3 부동산의 취득세 등 3,897,76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도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면제받았다.

바. 원고는 2016. 11. 8.경 기존 상호인 'D'을 'G'로 변경하였고, 사업의 종류에 기존 건설기계제조업에 도매업(중기매매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변경을 마쳤다.

사.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게 '2018. 4.경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채 서비스업인 건설기계정비업(지게차 수리,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 합계 48,295,950원(= 제1 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액 27,163,000원 + 제2 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액 816,000원 + 제3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액 3,897,760원 + 가산세 16,419,19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8. 6. 29.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2018. 7.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redacted]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추징된 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정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합청구된 민사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위와 같은 소송에서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경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건설기계 구조변경(지게차의 엔진교체 등 건설기계의 개량, 개조, 재제조 활동)을 영위해 왔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 참여하는 등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업을 계속 영위해 오고 있다. 또한 원고가 2015. 1. 12.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하였더라도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업무처리기준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조업이 아닌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10,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제조업(분류번호 10~33)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수리업(분류번호 95)이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 · 유지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원고는 2015. 5. 28.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지게차의 타이어 · 펜더 · 로테이팅롤클램프 · 로테이팅포크 · 마스트 · 포크포지셔너 · 사이드쉬프트 등의 부품을 장착하거나 제거하고, 원동기의 형식을 변경하는 등 구 건설기계관리법(2017. 8. 9. 법률 제14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2019. 3. 19. 국토교통부령 제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변경과 관련된 영업을 수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구조변경이 곧바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구조변경은 대체로 작업장치와 관련된 특정부품을 장착하거나, 작업장치 또는 원동기의 기존 부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부품을 장착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한 정비나 개별 지게차의 사용용도에 따른 부품의 교체 또는 변경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지게차의 본질적 개조나 개량, 재제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② 원고가 2017. 10. 18. 주식회사 H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위 용역은 건설기계에 설치되어 있던 엔진을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엔진의 단순한 교체를 두고 정비 내지 수리를 넘어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2015. 1. 14.경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원고의 간판에는 왼편에는 'A/S · 매매 · 렌탈'이라는 기재가, 오른편에는 'D'이라는 상호의 표시만 있을 뿐 지게차의 제조는 물론 정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④ B은 제1 부동산에서 'I'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금, 도장 및 종합수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B로부터 제1 부동산을 취득하여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였으나, 제1 부동산의 외형은 위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⑤ 원고는 "구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일환 55141-113(2000. 2. 29.)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업무처리기준(갑 제4호증)"에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정비업 중 종합정비업과 부분정비업은 건설기계 · 용품의 재생 및 개량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건설기계정비업 중 건설기계 및 그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 · 유지하는 건설기계 전문정비업(원동기 및 유압)은 전문수리업으로 보아 공장설립 및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건설기계정비업 중 부분정비업을 등록하고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에 해당하는 구조변경을 업으로 하는 이상, 원고의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그러나 갑 제4호증은 그 형식이 인터넷 블로그의 출력물로 보이고 작성자 등의 표시가 전혀 없어,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유효한 업무처리기준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그것이 유효한 업무처리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설립 등록업무의 과정에서 제조업과 수리업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업무처리기준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과 수리업의 구별에 관하여 기재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 예시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관계없이 '부분건설기계정비업'으로 등록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사업이 제조업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도 아니다. 더욱이 원고가 영위한 구조변경 영업이 곧바로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⑥ 원고는 2016. 1. 20. 및 같은 해 4. 26. 제2, 3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1.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매업(중기매매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7. 4. 17.부터 운영하였다는 홈페이지에는 자신의 업체에 관하여 '각종 지게차 다량보유, 중고지게차 매매, 지게차 렌탈, 지게차 정비'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메뉴도 '회사 소개, 중고지게차 매매, 지게차 렌탈, 지게차 정비, 고객센터'가 있을 뿐, 지게차의 제조에 관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2, 3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업이 아닌 중기도매업(분류번호 46532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지게차 임대업(분류번호 69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지게차 정비업(분류번호 95111 건설 광업용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계 및 장비 수리업)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치봉

판사 최미영

판사 신태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건설기계관리법(2017. 1. 17. 법률 제14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7.28.>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정비항목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건설기계	원동기	유압	타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및 믹서	정비업			크레인
1.원동기	가. 실린더헤드의 탈착정비	○	○	○	○	○		○		
	나. 실린더·피스톤의 분해·정비	○	○	○	○	○		○		
	다. 크랑크샤프트·캠샤프트의 분해·정비	○	○	○	○	○		○		
	라. 연료(연료공급 및 분사)펌프의 분해·정비	○	○	○	○	○		○		
	마. 위의 사항을 제외한 원동기부분의 정비	○	○	○	○	○	○	○		
2. 유압장치의 탈부착 및 분해·정비		○	○	○	○	○	○		○	
3.변속기	가. 탈부착	○	○	○	○	○	○			
	나. 변속기의 분해·정비	○	○	○	○	○				
4. 전후차축 및 제동장치정비(타이어식으로 된 것)		○	○	○	○	○	○			
5차체부분	가. 프레임 조정	○	○	○	○	○				
	나. 롤러·링크·트랙슈의 재생	○	○		○					
	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차체부분의 정비	○	○	○	○	○	○			
6이동정비	가. 응급조치	○	○	○	○	○	○	○	○	○
	나. 원동기의 탈·부착	○	○	○	○	○	○	○		○
	다. 유압장치의 탈·부착	○	○	○	○	○	○		○	○
	라. 나목 및 다목 외의 부분의 탈·부착	○	○	○	○	○	○			○
비고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만 할 수 있다.										

■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2019. 3. 19. 국토교통부령 제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끝.